

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)

본인은 한국장학재단(이하 '재단')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,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·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(본인의 의무사항 포함)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< 2018. 7. 10. 기준 >



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 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.
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주요서식은 '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-자료실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1.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

- 대출명 :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- 대출기간 :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,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
- 대출한도 : 등록금 (전액, 입학금+수업료 등) 생활비 (학기별 최대 150만원)
- 담 보 : 신 용 (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)

2. 대출금리

- 변동금리 :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
 - ▶ 2018년 2학기 기준 2.20%(학기별 변동금리)
- 학기의 기간 :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

3. 수수료 및 비용

-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(율)
 - ▶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
- 채무자가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「학자금상환법」 제30조(연체금), 제44조(과태료) 및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(비용의 부담) 및 제6조(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)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
 - ▶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미납 등 사유로 발생한 연체금
 - ② 채무자신고, 해외이주(유학)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
 - ③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
 - ④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
 - ⑤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
 - ⑥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
 - ▶ 담보설정비용, 인지대, 제세공과금 등 발생한 부대비용을 반환(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준용)
 - * 단,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(인지세 포함) 없음

4. 이자의 계산방법

-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: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,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됨
 - ▶ 예) 평년: 1,000,000원(원금) × 2.20%(금리) × N(일수)/365(일)
-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

구 분	의무상환액 납부시기 미도래	의무상환 납부시기 도래
기초, 차상위, 소득 4구간 이하	· 기초, 차상위 및 소득 4구간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* 다만 생활비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이자지원 없음	·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 방법 따름
소득 5~10구간	·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따름	

5.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

- 등록금대출 :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**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**(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)
 - ▶ 다만,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(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)
- 생활비 : 일시지급 또는 최대 4회 까지 분할하여 **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**

6.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

-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승인 및 실행 사실이 안내될 수 있음
 - ▶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고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
 - ▶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
 - ▶ 기타 대출규모,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
- *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

7. 대출자격 제한

-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
-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
-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
 - * 대출지급 전 : 발견일로부터 2년
 - * 대출지급 후 : 발견일로부터 3년
- 대출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
- 신입생인 대출자 중 최초 대출대상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
- 학적변동,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대학 등록 전 생활비 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
- **신(편)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**
- **대출 부적격자(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)**

8. 주요 신고의무

- 채무자신고
 - ▶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(연락처), 직장, 소득·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 확인
 - * 정기신고(매년 12월 중), 상시신고(정보변경 시)
- 해외이주신고
 - ▶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,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전액 상환
 - ▶ 다만,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
- 해외유학신고
 - ▶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하고, 담보제공 의무 발생
 - ▶ 신고 후 해외유학 중 상환의무는 유예되나, 장기미상환자로 인한 상환의무 및 유학계획 종료이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할 경우 전액상환의무 발생
- 미신고시 불이익
 - ▶ 주요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「학자금상환법」제44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9. 대출의 상환방법

- ◆ 소득에 따른 의무적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
- ◆ 자발적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

- 자발적 상환 : **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**
 - ▶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
 - * 상환방법 : CMS이체(자동이체 포함), 가상계좌
 - * 납부 : 평일 09시 ~ 19시
 - * 예약상환 : 평일 및 공휴일 09시 ~ 23시
- 의무적 상환 : **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**
 - * 상환방법 :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또는 대출자가 의무적 상환액을 직접납부(가상계좌 등)
 - * 근로소득자 의무적 상환방법
 - ① (선납) : 1년분 전액을 일시 또는 2회(각 50%씩) 분납
 - ② (원천공제) :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
 - * 종합소득, 양도소득, 상속·증여소득은 국세청이 의무상환을 국세신고기한으로 3개월 이내 결정 고지
 - * 납부 : 평일 9시 ~ 19시

10. 의무적 상환 발생

-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
- 상환기준소득 : 2,013만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,186만원*
 - *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
- 계산방식
 - ① 의무상환액 : {연간소득금액* - 상환기준소득(1,186만원)} × 상환율(20%) -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
 - * 근로소득자 :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, 사업소득자 : 수입금액 - 필요경비
 - ② 퇴직소득 및 상속·증여재산가액은 상환기준소득을 미적용
- ※ 국세청 ICL홈페이지(www.id.go.kr)에서 '상환금 간편계산'을 통해 계산 가능

- 미납시 불이익
 - ①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시 연체금(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)이 가산
 - ②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

11. 의무상환액 상환유예

- (대학생) 대출자가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 하더라도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4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
- (실직·퇴직·폐업·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자) 실(퇴)직·폐업·육아휴직으로 사업소득,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2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('18.9월 시행예정)

12. 장기미상환자

- 대상기준 : **졸업 후 3년이 경과 시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, 상환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% 미만인 경우**
- 절차 : 국세청을 통해 장기미상환자(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)의 소득·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상환의무 부과
- ▶ 의무상환액 : (소득인정액-상환기준소득)×상환율(20%)

- 미납시 불이익
 - ①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 시 연체금(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)이 가산
 - ② 1년 동안 미납시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
 - ③ '㉠'의 경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
- * 단,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분할상환

13. 상환의무의 면제

-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
-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

14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

-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상환, 채무자신고, 해외이주자 신고 관련 문의 (한국장학재단 ☎ 1599-2000)
- 의무적상환, 장기미상환자 상환 관련 문의 (국세청 ☎ 126 1 4)